

고용노동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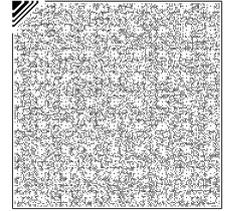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

수신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, 직무교육기관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, 유해위험
작업의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대표자

(경유)

제목 교육기관 감염병 예방대책 철저 수립 이행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 및 무재해를 기원하며, 코로나19(COVID-19) 감염병 예방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 2. '20.7.1.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자진폐쇄하고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는 자가격리 되었습니다.
 3. 다행스러운 점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사와 교육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율적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강사의 확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
 4. 모든 교육기관은 집체교육을 시행할 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생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, 지그재그로 자리배치 또는 투명칸막이 등 격벽 설치, 마스크 착용, 교육 전 체온측정, 손 소독, 기침 예절 준수 등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(2판)」 및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8판)」*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- *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lab.go.kr) 공지사항에 게시
5. 만약,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 조치 및 관할 보건소, 지방고용노동관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속히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고용노동부장관



전문위원

최선미

시설사무관

이지형

산업보건과장

전결 2020. 7. 3.

김동욱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2873

(2020. 7. 3.)

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/ www.moel.go.kr
세종정부청사 11동

전화번호 044-202-7739 팩스번호 044-202-8093 / mimi17@korea.kr / 비공개(5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